

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선정마을 지역개발(인센티브) 지원을 위하여
구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어 기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
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주민지원기금 이자는 구미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징수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

- ①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이자는 구미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.
-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관계법령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~ ③ 생략

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·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

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안 진 희
	담 당	이 재 삼
	담 당 자	강 민 채 (480-5187)